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92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2
2.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4
※ 참고자료	
1. 전국상인연합회 현황	8
2. 전국상인연합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비교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19.
3. 회부연월일 : 2024.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는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인연합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및 제72조).

Ⅲ. 검토의견

1.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상인연합회) ① 상인회, 상점가 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조합·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66조(상인연합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 2.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공동 상품 개발과 판로 확보 3.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구매·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4.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u>연합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u> ⑥ (생략)	⑤ -----<u>연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u>-----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¹⁾를 받아 설립된 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 개발과 판로 확보 등의 사업을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연합회가 동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 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및 동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명부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명세서

②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설립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내용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1.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되면 상인연합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 상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²⁾ 하는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상인연합회와 유사한 성격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³⁾ 법률 개정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2)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연합회로는 ‘전국상인연합회’가 유일하며, 전국상인연합회는 주 회원이 영세 상인인 관계로 운영비(임차료, 인건비 등) 조달이 어려워 전통시장·상점가 상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 모색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인연합회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7항·제8항, 제7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상인연합회) ⑦ 중소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설> ⑧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⑨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벌칙)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제66조(상인연합회) ⑦ ----- -----연합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중소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72조(벌칙) ① (현행 제6항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연합회가 제66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인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지도·감독 수단에 관한 법적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상인연합회의 업무에 대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면 상인연합회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도·감독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집행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인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의 신설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⁵⁾처럼 직접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행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9조(벌칙) ① (생략)

②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함께 상인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명령 권한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

-
-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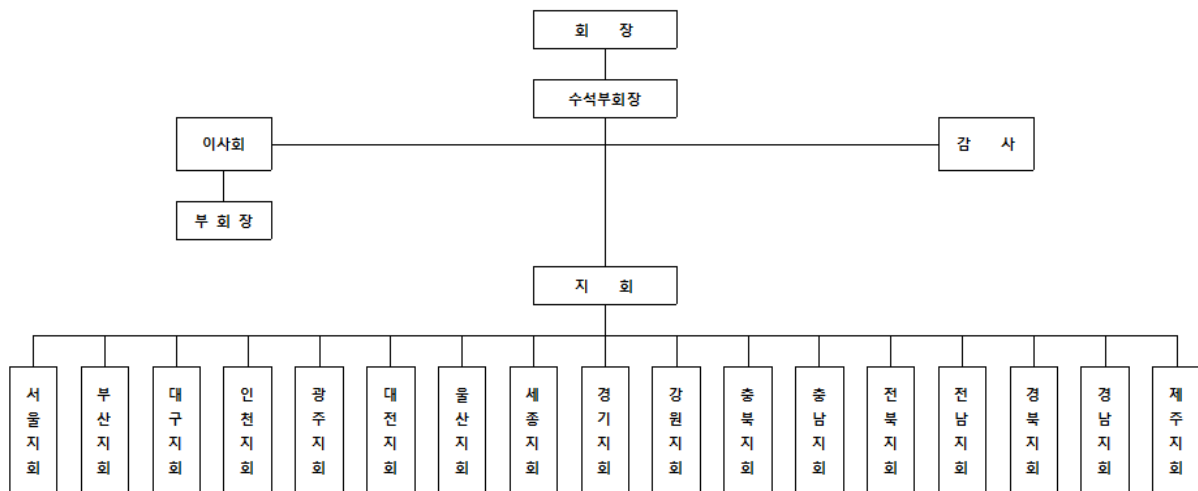
③ (생략)

【참고자료 1】 전국상인연합회 현황

- 설립배경 :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지원, 시장·상점가 상인 조직화 도모
- 근거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 설 립 : 2006. 5. 17.
- 단체성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 法定 단체(본회 및 17개 지부)
- *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295 (054-772-5322)

□ 대표자 및 임원

- 임 원 : 회장(대표자) 포함 19명(이사 17, 감사 2)
- 정회원 : 971개 / 전국 1,388개 전통시장, 27만여명의 상인
- 조 직 : 17개 지회



- 주요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규정
 - 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
 - 공동상품개발과 판로확대
 - 공동협력사업 및 유통구조개선 공동사업
 -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위탁사업

【참고자료 2】 전국상인연합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비교

구분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 설립 허가	중소벤처기업부 * '06.5월 설립, 직원 0명	중소벤처기업부 * '14.4월 설립, 직원 26명
■ 사업비 지원	정부 및 지자체 * '24년 20.1억 원 정부 지원	정부 및 지자체 * '24년 17.6억 원 정부 지원
• 수행 사업	① 상권활성화 사업 ⇒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사업 (4억 원, 인건·임차비 지원 성격) ②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 지역상품권 전시회(10.4억 원) ③ 구매·판매 및 물류 관련 공동사업 ④ 상인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 시장매니저 지원 (5.7억 원, 인건비 지원 성격) ⑤ 정부 및 지자체 위탁 사업 * (근거) 전통시장법 제66조제4항	①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정보 제공 ② 구매 및 판매 등 공동사업 ③ 정책 건의 ⇒ 소상공인 규제 및 애로 발굴·해소(4억 원) ④ 조사, 연구 및 교육사업 ⇒ 소상공인 발전방안 연구 (4.6억원) ⇒ 역량강화(9억 원) ⑤ 조직화 지원사업 * (근거) 소상공인법 제25조제1항
■ 운영 경비 지원 * 인건비, 임차비	X	중소벤처기업부('15년~) * '24년 운영비 9억 원 (인건비 7, 임차비 2) 지원 중
■ 관리·감독 주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제출 요구	○	○
•자료 보고 요구	X	X
•행정명령 (시정조치)	X	○
•벌칙 규정(벌금)	X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